

대전지방법원 2019. 12. 3 선고 2018가단203026 판결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대전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이효상

피고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은주

변론 종결2019. 11. 5.

판결 선고2019. 12. 3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9,969,799원 및 그 중 29,969,694원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2018. 2. 19.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A는 원고에게 29,969,799원 및 그 중 29,969,694원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에 대하여: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1. 체결한 매매계약은 32,342,74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32,342,7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이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들은 1996. 10. 18. 혼인하여 1998년생인 자녀 1명을 낳아 기르다가 2017. 7. 12. 협의이혼 신청을 한 다음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2017. 12. 24. 이혼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5. 9. 10.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000만원, 신용보증기한 2020. 8.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대출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이행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행한 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피고 A는 2015. 9. 10.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기하여 C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 (3) 2017. 11. 21. 피고 A가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 2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0,353,144원(원금 3,000만원 + 이자 353,1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18. 1. 22. 당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미환급보증료 383,450원이 있었는데, 이로써 위 대위변제금과 상계하면 대위변제금은 29,969,694원 남게 된다.
- (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확정손해금이 105원 발생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18. 1. 22.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피고들 사이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

- (1)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14. 7. 4. 1. 1/2지분씩 2012.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 (2) 그런데 피고 A는 2017. 7. 2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7. 24.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3)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2014. 7. 4. 채무자는 피고 A이고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F인 채권최고액 6,050만원, 채권최고액 4,290만원 등 2건의 근저당권(이하 '2014. 7. 4.자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6. 9. 22. 2014. 7. 4.자 각 근저당권이 말소(피고 B이 2014. 7. 4.자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000만원 상당을 변제함)됨과 동시에 채권최고액 1억 5,540만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이 125,277,072원임)이 2016. 9. 22. 설정된 다음, 그 후 2018. 1. 18. 채권최고액 1억 8,360만원, 채무자 피고 B, 채권자 주식회사 F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8. 1. 22.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피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09,018,046원을 변제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G, 주식회사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29,969,799원(대위변제잔액금 29,969,694원 +

확정손해금 105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금 29,969,69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2. 19.까지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거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A가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위 법원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32,342,74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 B에게 처분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이다.

○ 다만 위 매매 이후 피고 B의 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위 매매는 이 사건 지분 시가 1억 1,250만원에서 위 지분이 부담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2,777,072원을 제외한 100,422,928원 중 원고의 구상원리금 채권액 32,342,74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지분은 피고 B이 배우자인 피고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실소유자인 피고 B이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 가사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피고 A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이 사건 매매의 사해행위 여부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가 이 사건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위 지분을 피고 B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살피건대 피고 A가 피고 B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각 1/2지분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지분은 피고 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을나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A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분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피고들이 1996. 10. 18.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낳아 기르면서 피고 B은 지체장애 2급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간 반면에 피고 A는 피고 B 몰래 대출을 받아 다단계 투자하였다가 실패하는 등으로 부부관계가 파탄나자 2017. 7. 12. 협의이혼 신청을 한 다음 2017. 12. 24. 이혼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들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가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한 행위는 피고 A가 이혼을 하면서 피고 B에게 재산분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혼 후 소유하게 되는 재산의 정도와 함께 피고 A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을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피고 A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반면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32,342,741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피고들의 혼인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혼인생활 중 피고들 공동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정에서,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6. 9. 22.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2014. 7. 4.자 각 근저당권의 피고 A의 피담보채무 9,000만원 상당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피고 A와 이혼하면서 그로부터 시가 1억 1,250만원의 이 사건 지분을 재산분할받은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재산분할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 사이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김현석

별지